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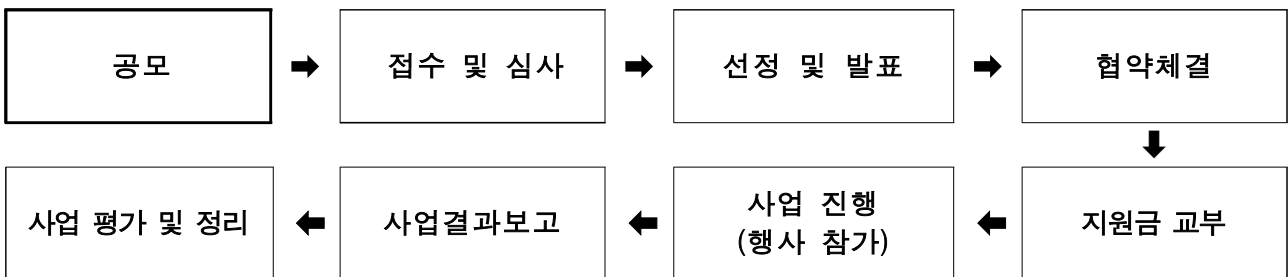
창작뮤지컬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〈뮤지컬분야 전문가 국제행사 참가지원〉

1. 사업 소개

□ 사업 목적 및 취지

- 국내 뮤지컬 단체 및 기획자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작품을 홍보하고 해외 뮤지컬 관계자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
□ 사업추진 절차



2. 공모 및 지원 내용

□ 공모분야 및 공모주제

- 국내 뮤지컬단체 대표, 기획자, 프로듀서, 연출가

□ 지원 내용

- 직접지원 : 국제왕복항공료, 숙박비, 비자 발급비, 행사 등록비 등

3. 지원 신청

□ 신청자격 : 국내 뮤지컬 기획자

□ 신청기간 : 2019년 4월 예정 (예정)

□ 제출서류 및 자료

- ① 지원신청서 1부(예술경영지원센터 양식/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)
- ② 이력서 국문 1부
- ③ 재직증명서 1부(단체 대표의 경우,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)
- ④ 기존 사업성과 및 활동내역
- ⑤ 홍보하고자 하는 작품 소개자료 등

□ 신청서 제출 방법
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www.gokams.or.kr>)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
 - 뮤지컬분야 전문가 국제행사 참가지원 이메일(lsm0123@gokams.or.kr)로 신청
- ※ 제출 서류는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로 송부
- ※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불가

4. 지원 심의

□ 심의 방법 및 내용

- 중점 심의방향
 - 신청인의 활동 이력과 기존 해외진출 성과 및 기여도
 - 신청인과 해당 참가행사의 적합성 및 활동 계획의 연관성
 - 신청인(또는 소속단체)의 작품 수준 및 해외시장 경쟁력
- 심의 방법
 - 행정검토 : 지원가능 대상 여부 및 제출 서류 검토
 - 서류심의 : 국내 전문가 심사
- 심의 기준

구분	항목	세부 내용	가중치(%)
서류심의	활동 이력	활동 이력과 기존 해외진출 성과 및 기여도	40
	활동 계획	참가행사의 적합성 및 활동 계획의 연관성	30
	해외경쟁력	작품 수준 및 해외시장 경쟁력	30

□ 전년도 평가 반영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5. 지원제외대상 및 유의사항

□ 지원제외대상

- 기획재정부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
- 문화체육관광부의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7조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(2018.03.30.개정)
-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
- 국·공립(도, 시, 군립) 및 그 산하 출연단체 사업
- 초·중·고·대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사업 (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)
- 학교, 학원, 종교기관,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사업

6. 문의처
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진흥실 공연유통팀 02-708-2236/2284